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가. 제품명 : 멀티플러스 수성바니쉬(무광)
-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 - 권고용도 : 목재용 상도
 - 사용상의 제한 : 권고 용도의 사용 제한
- 다. 제조사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 - 회사명 : (주)노루페인트
 -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
 - 정보제공 및 긴급연락처 : 031-467-6114 건축기술1팀 임재철

2. 유해 위험성

- 가. 유해 위험성 분류
 - 수생 환경유해성물질 만성 구분3
-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 - 그림문자
 - 신호어 : 자료 없음
 - 유해 위험 문구 :
 -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
 - 예방조치 문구
 - 예방
 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 - 대응
 - 자료 없음
 - 저장
 - 자료 없음
 - 폐기
 - P501 관련 법규(폐기물관리법)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·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다. 유해,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

물질명	NFPA지수	보건	화재	반응성
\$1(영업비밀)		자료 없음	자료 없음	자료 없음
물		0	0	0
이산화 규소		1	0	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번호	함유량(%)
\$1(영업비밀)	-	-	61~71
물	Water	7732-18-5	29~39
이산화 규소	Silicon dioxide	7631-86-9	1~10

4.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 - 자극, 통증 부기, 눈물 눈부심등 기타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노출된 눈을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행구시오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 - 15분 이상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자극, 통증등 기타 증상 발생시 전문의에게 노출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오. 오염된 피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.
- 다. 흡입했을 때 :
 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 호흡이 곤란할 시 산소를 공급하십시오. 일방판막이 장착된 포켓 마스크나 다른 호흡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시오.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.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.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.
- 라. 먹었을 때 :
 - 섭취한 물질의 위 세척을 통한 조기 제거는 출혈이나 관통의 전위 합병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.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전문의의로부터 받을 것. 구토를 시키시오.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 할 것.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,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.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:
 -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5. 폭발 · 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소화제
 - 적절한 소화제 :
 -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, 가스계 소화약제, 일반적인 포말
 - 부적절한 소화제 :
 - 물은 소화제로 적절하지 못함.
 - 대형 화재 시 :

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. 바람을 등지고 막대한 양의 소화 약제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열분해생성물 :
이산화탄소, 유독 탄소화합물/질소화합물/황화합물
- 화재 및 폭발 위험 :
수성(수용성 제외) 제품인 경우 제품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없음

다.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착용할 보호구 :
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, 방열복, 방열모, 방열장갑, 방열 장화
- 예방조치 :
화재 진압 인원과 인원이 화재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시오. 적응 가능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시오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- 착용할 보호구 :
유기용제용 호흡용보호구 및 기타 적절한 보호구/보호의/보호장갑
- 조치사항 :
피부접촉을 피할 것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대기 :
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.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
- 토양 :
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누출된 물질을 깊은 물웅덩이의 바닥이나 격리수용 가능한 장소 또는 모래 주머니를 쌓은 방벽 내로 옮기시오.
- 수중 :
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.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소량 누출 시 :
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서 적합한 용기에 옮기시오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다량 누출 시 :
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 :

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시 국소배기 및 환기장치 등을 이용할 것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 :

격리된 장소에 저장, 결빙주의, 고온체 주의. 강산화제, 산과 접촉을 피하시오. 보관 적정 온도 : 5-35℃ 옥외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할 것. 수분 증발 및 오염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는 완전히 밀폐해서 환기가 좋은 옥내에서 보관할 것.

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1) S1 (영업비밀)

- 국내규정 : 자료 없음
- ACGIH규정 : 자료 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 없음

2) 물

- 국내규정 : 자료 없음
- ACGIH규정 : 자료 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- 국내규정 : TWA : 10 mg/m³
- ACGIH규정 : 자료 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 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

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
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.
자료 없음
자료 없음

다. 개인 보호구 :

- 호흡기 보호 :
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할 것.
- 눈 보호 :
미스트 등에 의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할 것.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간이세안기구(식염수) 비치 또는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.
- 손 보호 :
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
- 신체 보호 :
방진복 또는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.

9. 물리·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 : 반투명 액체
- 나. 냄새 : 무취
- 다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
- 라. pH : 자료없음
- 마. 녹는점/어는점(℃) : 자료없음
- 사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(℃) : 자료없음
- 아. 인화점(℃) : 해당 없음
- 자. 증발 속도 : 자료없음
- 차. 인화점(고체, 기체)(℃) : 자료없음
- 카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- 타. 증기압 : 자료없음
- 파. 용해도 : 자료없음
- 하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- 거. 비중 : $1.03 \pm 0.02/25^\circ\text{C}$
- 너. N-옥탄올/물 분백계수 : 자료없음
- 더. 자연발화 온도(℃) : 자료없음
- 러. 분해 온도(℃) : 자료없음
- 머. 점도 : 62 ± 2 (KU/25℃)
- 서. 분자량 : 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:
자료 없음
- 나. 피해야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 :
마찰, 오염을 피하십시오
- 다. 피해야할 물질 :
자료 없음
-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
열분해생성물(탄소 등)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 -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폐이상, 호흡곤란, 저체온, 구토…….
 - 입을 통한 섭취 : 구토, 설사, 위통, 불규칙 심장박동…….
 - 피부 접촉 : 자극, 화상, 신경이상…….
 - 눈 접촉 : 자극, 눈손상…….
-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 - 1) S1 (영업비밀)
 - 급성 독성
 - 경구 : 자료 없음
 - 경피 : 자료 없음
 - 흡입 : 자료 없음
 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자료 없음
 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 없음
 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 없음
 - 피부 과민성 : 자료 없음
 - 발암성
 - 산업안전보건법 : 자료 없음
 - 고용노동부고시 : 자료 없음
 - IARC : 자료 없음
 - OSHA : 자료 없음
 - ACGIH : 자료 없음
 - NTP : 자료 없음
 - EU CLP : 자료 없음
 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 없음
 - 생식독성 : 자료 없음
 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 없음
 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 없음
 - 흡인유해성 : 자료 없음
 - 2) 물
 - 급성 독성
 - 경구 : LD50 > 90000 mg/kg Rat (KOSHA)
 - 경피 : 자료 없음

- 흡입 : 자료 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해당없음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 없음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 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 없음
- 발암성
 - 산업안전보건법 : 자료 없음
 - 고용노동부고시 : 자료 없음
 - IARC : 자료 없음
 - OSHA : 자료 없음
 - ACGIH : 자료 없음
 - NTP : 자료 없음
 - EU CLP : 자료 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 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 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 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 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- 급성 독성
 - 경구 : LD50 = 3160 mg/kg Rat (TOMES; HAZARTEXT)
 - 경피 : LD50 >2000 mg/kg Rabbit (IUCLID)
 - 흡입 : Dust LC50 >2.2 mg/ℓ 1 hr Rat (IUCLID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래빗 경자극 (IUCLID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 없음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 없음
- 피부 과민성 : 피부 과민성 없음 (SIDS)
- 발암성
 - 산업안전보건법 : 자료 없음
 - 고용노동부고시 : 자료 없음
 - IARC : Group 3
 - OSHA : 자료 없음
 - ACGIH : 자료 없음
 - NTP : 자료 없음
 - EU CLP : 자료 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 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 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 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공급처 정보에 따라 석영으로 분류되지 않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 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1) S1 (영업비밀)

- 어류 : 자료 없음
- 갑각류 : 자료 없음
- 조류 : 자료 없음

2) 물

- 어류 : 자료 없음
- 갑각류 : 자료 없음
- 조류 : 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- 어류 : LC50 5000 mg/ℓ 96 hr (IUCLID)
- 갑각류 : LC50 7600 mg/ℓ 48 hr (IUCLID)
- 조류 : EC50 440 mg/ℓ 72 hr (IUCLID)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1) S1 (영업비밀)

- 잔류성 : 자료 없음
- 분해성 : 자료 없음

2) 물

- 잔류성 : log Kow = -1.38
- 분해성 : 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- 잔류성 : log Kow = 0.53
- 분해성 : 자료 없음

다. 생물농축성

1) S1 (영업비밀)

- 농축성 : 자료 없음
- 생분해성 : 자료 없음

2) 물

- 농축성 : 자료 없음
- 생분해성 : 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- 농축성 : BCF = 3.162

○ 생분해성 : 자료 없음

라. 토양이동성

1) S1 (영업비밀)

자료 없음

2) 물

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자료 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

1) S1 (영업비밀)

자료 없음

2) 물

자료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자료 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 :

- 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 할 것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 :

-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 :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 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 없음

라. 용기등급(해당하는 경우) : 해당 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(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) : 비해당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○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 없음

○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 없음

15. 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"노출기준설정물질", "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", "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", "발암성물질"

1) S1 (영업비밀)

제조금지물질 : 해당 없음

제조허가물질 : 해당 없음

관리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노출기준설정물질 : 해당 없음

허용기준설정물질 : 해당 없음

발암성물질 : 해당 없음

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
공정안전보고서(PSM)제출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2) 물

제조금지물질 : 해당 없음

제조허가물질 : 해당 없음

관리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노출기준설정물질 : 해당 없음

허용기준설정물질 : 해당없음

발암성물질 : 해당없음

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
공정안전보고서(PSM)제출대상물질 : 해당없음

3) 이산화 규소

제조금지물질 : 해당 없음

제조허가물질 : 해당 없음

관리대상물질 : 해당 없음

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: 1% 이상 일때

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: 1% 이상 일때

노출기준설정물질 : 산화규소(비결정체 실리카겔)TWA : 10 mg/m³

허용기준설정물질 : 해당없음

발암성물질 : 해당없음

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
공정안전보고서(PSM)제출대상물질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1) S1(영업비밀)

- 기존물질 : 해당 없음
-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: 해당 없음
- 유독물 : 해당 없음
- 취급제한 : 해당 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 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물질 : 해당 없음
- 사고대비물질 : 해당 없음

2) 물

- 기존물질 : 해당됨
-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: 해당 없음
- 유독물 : 해당 없음
- 취급제한 : 해당 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 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물질 : 해당 없음
- 사고대비물질 : 해당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- 기존물질 : 해당됨
-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: 해당 없음
- 유독물 : 해당 없음
- 취급제한 : 해당 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 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물질 : 해당 없음
- 사고대비물질 : 해당 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1) S1 (영업비밀)

해당 없음

2) 물

해당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해당 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.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1) S1 (영업비밀)

국내(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) :

해당 없음

국외규제 :
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 없음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 없음
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 없음
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 없음

2) 물

국내(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) :

해당없음

국외규제 :
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 없음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 없음
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 없음
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 없음

3) 이산화 규소

국내(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) :

해당없음

국외규제 :
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
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 없음

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 없음

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 없음

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 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근거하여 국내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 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

나. 최초 작성일 : 2013-10-31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8회(2020-06-29)

라. 기타 : MSDS 게시 정보 " WWW.NORROOPAINT.COM"